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

강동범* · 김상진**

요 약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Improvement Plans for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mainly on application prerequisites and partially exemptible qualifications-

Kang Dong Beom* · Kim Sang Jin**

ABSTRACT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certification in 12. 2012 after it was first given in 2006 as a civil certification and then became a national test in 2013. Thinking it short of regulations on some of exemptible requirements as well as test-taking age limit due to the certification's specificity, the current researcher tried to present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 in taking the test, only the bottom age limit is given with no top age limit, so a regulation on its top age limit needs to be newly made so that it can select those substantially able to protect persons. Second, it can expand some of its exemptible requirements to not only police civil officials, private security guard civil officials but also military civil officials and college graduates who have taken all the courses for its primary test and have career in private security guard. Third, certain validity period can be set by standard of the date when the certification test application is accepted after retirement from related occupations so that they can maximally exert their ability in actual works. Fourth, the exemptible courses of the test must be limited to the primary test only while its hands-on test must not be exempt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ability for actual personal protection. In this manner, it's necessary that the personal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as a national certificate,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o keep abreast with the growing civil protection industr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Guard, Qualification, Exemptible Requirements, National Certification

접수일(2015년 9월 29일), 수정일(1차: 2015년 10월 22일)
계제확정일(2015년 10월 28일)

* 건양대학교/국방경찰행정학부
** 용인대학교/항공보안학과

1. 서론

최근 신변보호업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영세한 업체의 난립은 결국 저가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이직함에 따라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져 사기가 저하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중의 하나로 경비원의 자격제도가 대두되어 왔다[1].

이에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통하여 능력을 가진 전문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성숙된 사회의 구현을 실현하고자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였다[2].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증의 홍수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자격증이 발행되고 있다[3]. 민간경비분야에서도 1997년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민간경비원 능력의 판단지표를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경비분야의 발전을 예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자격제도의 전문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신변보호 업무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한 신변보호사 자격 검증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며, 이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국가공인의 승인을 받은 만큼 신변보호의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4].

본 논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자격제도 중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응시자 상한연령 규제”,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확대”, “자격검정 경력인정자 기준강화”, “자격검정 면제과목 축소”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자료의 검토 및 신변보호사 자격을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경비협회의 규정과 자격검정 시행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도입이 10년째인 현재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운영현황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에 따른 문제점과 자격검정 일부면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1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운영현황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사)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자격제도로써 제1회부터 제7회까지는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제8회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현재 제9회까지 총 7,823명이 응시하였으며, 총 5,6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약 69.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표 1>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행현황

회수	등급	검정일	총 응시자 수(명)	총 합격자 수(명)	합격률 (%)
1회	2,3급	'06.11.25	805	763	94.8
2회	2,3급	'07.11.03	1,133	1,090	96.2
3회	2,3급	'08.11.15	1,308	1,204	92.0
4회	통합	'09.11.14	1,050	634	60.4
5회	통합	'10.11.06	622	501	80.6
6회	통합	'11.11.05	734	427	58.2
7회	통합	'12.11.10	784	534	68.1
8회	통합	'13.11.09	935	265	28.3
9회	통합	'14.11.08	452	196	43.7
계			7,823	5,614	69.1

출처: (사)한국경비협회 내부자료.

2.2 응시자격 현황 및 문제점

(사)한국경비협회에서 주관하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 응시자격 기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제1회 신변보호사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부터 2008년 제3회 자격검정까지 응시자격 기준은 첫째,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둘째,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 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이었다. 자격검정 1회부터 3회까지는 시큐리티 관련학과나 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반인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2009년 제4회 자격검정부터 제6회 자격검정까지 응시자격기준은 첫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둘째,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이었다. 이때부터 응시연령 18세 이상 인자에 국한하던 사항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로 응시연령을 규정하였다. 또한 관련학과 출신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자격시험응시의 기회가 주어졌다. 자격검정 제4회부터 제6회까지는 시큐리티 및 경찰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응시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응시 가능연령은 18세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 제7회 시험부터 현재까지의 응시자격으로는 첫째, 18세 이상인 자, 둘째,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셋째,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이다. 자격검정 7회부터 9회까지는 기존 60세 미만의 상한연령과,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응시자격기준을 2차례 수정 및 보완 하였으나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문제점으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신변보호업무의 특성상 상한응시연령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3 자격검정 일부면제 현황 및 문제점

응시자격과 같이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일부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일부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제1회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이론과목)에 대해서 면제가 되었는데 면제대상으로는 첫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시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 둘째,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인정제의 시

큐리티 관련학과, 경찰관련학과 재학 및 재학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이었다. 이수과목으로는 1차 학과시험과목인 민간경비론·경비업법·경호학·경찰학·범죄학·법학개론에 한해 평가되었으며, 평가는 학점으로 점수를 산정하였다. 이론 2개 과목에 대한 평가는 학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A학점, 80점 이상인 경우 B학점, 70점 이상인 경우 C학점, 60점 이상인 경우 D학점으로 산정하였다[5].

2007년 제2회 시험부터 2008년 제3회 시험까지는 3급 응시자에 한해 학과시험 관련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는 1차 학과시험(1)을 면제하였다. 이수과목으로는 경호·경비 관련학 과목, 경찰 관련학 과목, 법학 관련학 과목으로 신변보호사 자격과 연관되는 과목으로 한정하였다.

실기시험과목은 제1회부터 제3회 자격검정까지 경호무도 50점, 체포·호신술 50점 합계 총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였다.

산정기준은 범인 대응술에 대한 정확도, 수련도 및 이해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2급 응시자는 상당한 수준의 능력, 3급 응시자는 일반적 능력정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2009년 제4회 자격검정부터 급수를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2012년 제7회 시험까지 검정의 일부면제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나 (사)한국경비협회를 통하여 소급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후 협회의 노력으로 2012년 12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이듬해인 2013년 제8회 검 국가공인 제1회 자격검정부터 현재까지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된 사람, 둘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학과시험 과목 중 “민간경비론”과 2차 실기시험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

2차 실기시험과목은 구분동작과 연속동작(범인 대응술, 체포 연행술)을 각 5수씩 시행하여 범인 대응술 및 체포 연행술에 대한 정확도, 이해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무도가산점²⁾을 포함하여 실기시험 10

1)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시험 제2회 1차 학과시험은 민간경비론 10문항, 경비업법 20문항, 경호학 20문항이었다.
2) 무도가산점(실기시험)은 경찰청 가산점에 한함(무도 2:3

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국가공인 제5회 신변보호사 자격 재검정(완화)³⁾ 까지만 기존 민간자격이었을 때 신변보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재검정(완화) 과정에서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고, 1차 학과 시험에서 평균 60점이 넘는 자에게 국가공인 자격을 재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자격검정 일부 면제자의 기준은 3차례 수정 및 보완 하였으나 객관화시키기에 다소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문제점으로는 일부시험 면제자가 한정적이며, 일부시험 면제자의 경력기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 퇴직 후 소요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격검정 일부면제 시험을 1차 일부, 2차 전부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에 비해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사료된다.

3.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자격기본법」 제3조4)에 따르면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에 있어 자격체제에의 부합이 명시되어있다. 신변보호사 자격 역시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자격체제에의 부합이 요구되어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1 응시자격 상한연령 규정신설

현재 자격검정 응시연령에 관한 사항으로는 “18세 이상인 자”로 최저 응시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

단은 2점, 4단 이상은 4점을 가산한다).

- 3) 2015년 8월달에 마지막 재검정(완화) 실시
- 4)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변보호사의 업무와 같이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직무에 있어서도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순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을 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순경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7].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업무가 역동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변보호활동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경찰공무원 상한응시연령 규정을 다음 <표 2>와 같이 살펴보았다.

<표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계 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경정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항공 분야는 27세 이상 45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 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합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 30세 이하)

출처: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2.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채용시험 응시연령)에서는 <표 2>와 같이 공개경쟁채용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은 40세 이하로 하고 있으며, 특별채용시험에서도 항공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만 45세 이하로 하고 있을 뿐, 대부분 40세 이하로

하고 있다.

3.2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확대

현재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의 일부 면제자⁵⁾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 한 사람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 대학 졸업생 중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및 경호·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가공인 자격의 다른 분야인 경영지도사⁶⁾, 경비지

5)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사)한국경비협회 신변 보호사 자격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1차(학과)과목 중 “민간경비론”과 2차(실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6)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면제기준

* 1차 시험 면제조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인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 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2.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의 각호에 의한 대학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 후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종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 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양성과정(1차 수료 시험)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해 5년 이상 근무경력

- 학위 / 학력 및 실무경력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

도사⁷⁾ 등의 1차 면제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⁸⁾와 같이 자격검정 1차 학과시험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정보처리, 환경, 생명공학 분야)

- 실무경력기간 : 학위 취득 전이나 학력 인정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7)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기준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 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한 사람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중소기업진흥법) 제 48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 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면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역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부면제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둘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호·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셋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호·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일부면제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자격검정 경력인정 자 기준강화

현재까지 실시된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의 규정 및 시행공고에서는 경력인정 자에 대한 경력소요기간 제한에 대하여 일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경력자들의 관련 직종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일반 수험생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박기범(2014)[6]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장실무능력 부족을 조사하였다. 그 중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신변보호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가 첨가하자면 일정기간 현장 실무경험자에 대해서 무조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면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퇴직 후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험일을 기준으로 경력 5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검정 경력인정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변보호사자격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시작되어 세 번의 공인자격신청을 통해 2012년 12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자격검정의 관리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형평성을 갖추어 신변보호사를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신변보호사 선발에 있어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상한응시연령을 40세로 규정한다.

자격검정 응시연령에 있어 최저응시연령인 18세 이상인 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자격제도의 취지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변보호사 업무가 역동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업무를 감안하여 신변보호활동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찰공무원 상한응시연령제도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는 상한응시연령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검정 일부면제자를 확대한다.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과 같이 5년 이상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재직한 사람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호·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호·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도 일부면제자에 포함하여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력인정 자 기준을 강화한다.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경력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응시한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험일을 기준으로 경력 5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검정 경력인정자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경력인정 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검정시험의 일부면제과목을 1차 학과시험에만 적용한다.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고, 1차 학과시험에 한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개선방안이 신변보호사의 자질과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인정받는 신변보호사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주관사인 (사)한국경비협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계원·서진석,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12(1): 30, 2013.
- [2] 이상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14(6): 36, 2014.
- [3] 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정보·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11(2): 26, 2011.
- [4] 박기범, “신변보호업자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13(3): 135, 2014.
- [5] 김일곤,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13(2): 47, 2013.
- [6] 박기범, “신변보호업자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13(3): 138-141, 2014.
- [7] 2012. 5. 31. 2010헌마278 참조.

[저자소개]



강 동 범 (Dong-beom Kang)

2010년 8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석사
2015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現)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외래교수

email : a039270@naver.com



김 상 진 (Sang-jin Kim)

2003년 2월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 석사
2008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 용인대학교 학점은행제
항공보안학과 겸임교수

email : ksj8004@naver.com